



CI 보험의 함정

건설공사 입찰 평가때 돈받은 평가위원 처벌

추건교, 투기과열지구 추가 해제여부 재검토

건설공사 입찰 평가에 참가한 민간 위원이 금품을 받을 경우 특정경제가중 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이달 말과 다음달 초에 걸쳐 총청권 등 지방 투기과열지구 추가 해제 여부가 재검토된다.

건설교통부 이용섭 장관은 19일 서울 노원동 임페리얼팰리스호텔에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초청으로 열린 '건설산업 선진화 전략' 강연에서 "건설산업 선진화의 최우선 과제는 부실·부조리 관행의 근절"이라면서 "탄기·대안입찰제도를 개선해 입찰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불법모비를 원천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탄기·대안입찰제도는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 발주때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 입찰에 부치는 제도로 작년의 경우 이 제도에 의한 발주물량이 10조4천억원으로 전체 공공공사의 35.2%를 차지했다.

이 장관은 탄기·입찰제도 개선과 관련해 "지금은 입찰업체별로 총점만 공개하고 있으나 평가위원별 점수와 평가사유도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10명이내인 평가위원수도 10명이상-15명이내로 확대해 객관성 시비를 막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민간 평가위원도 공무원으로 의제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해 금품을 수수할 경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한 뇌물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악성종양만으론 보험금 못받는다

암·뇌졸중 등 전이돼야 인정... 위험관리 대비용으로 부적격

이식수술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질병으로 진단받을 경우 타 보험보다 고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CI보험의 보험금 지급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일반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이 CI보험에서는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다. 예를 들어 암의 경우 일반보험은 암세포 자체가 발견될 경우 암 진단자금을 받을 수 있지만, CI보험은 악성종양세포가 존재하고 이 악성종양세포가 주위 조직으로 전이됐을 경우에 한해 진단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까닭에 CI보험에 가입한 후 암이나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으로 진단을 받았음에도 보험금을 받지못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심지어 법적인 공방을 벌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이 여러 분에게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가족 중에 한명이 중대한 질병으로 입원해 있어 병 수발을 하기도 모자랄 판에 보험회사와 법원에서 싸워야 한다면 얼마나 분통터지는 일일겠는가.

CI보험은 말 그대로 중대한 질병에 대해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며, 타 보험에 비해 매우 비싼 편이다. 따라서 CI보험은 의료비 보장 보험이나 성인병 보장 보험 같은 기본적인 위험관리를 위한 보험에 가입한 후 가족력이 걱정될 경우나 가입을 고려할만하지 결코 기본적인 위험관리를 위한 대비용

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최근 보험회사에서는 성인병에 대한 진단범위를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암 수술비 축소, 뇌경색 보장 제외, 허혈성 심장질환 보장 제외 등을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CI보험에서는 아예 '중대한'이라는 단어를 가져다 붙여 CI보험금을 사망보험금보다 받기 어렵도록 만들어 놓았다. 역으로 생각하면 의료기를 발달로 인해 성인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관계로 위와 같은 질병 치료로 인해 보험회사의 위험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치료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성인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CI보험

▲CI (Critical Illness : 치명적 질병)보험 = 건강보험과 종신보험의 성격에 동시에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 보험 가입자가 암·뇌졸중·심근경색증 등 치명적인 질병이나 갑작스런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나 가족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에 가입하기보다 암 수술비, 뇌경색·뇌졸중을 포함한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을 포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TNV에이비이XFP팀장)

중국에 쫓기고... 일본에 치이고...

한국 자동차산업 샌드위치 '위기'

국내 자동차산업이 대중(對中) 수출 하락세와 대일(對日) 수입 증가세로 인해 '샌드위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이날 '중국 자동차산업의 수출입 동향' 보고서에서 "최근 대중 수출이 하락세로 반전한 반면 대일 수입은 계속 증가추세로, 중국의 추격과 일본과의 기술격차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완성차의 중국 수출은 지난 2004년 4억5천만 달러에서 2005년 6억2천만 달러, 지난해 6억 달러, 지난 1~4월 2억7천 달러로 그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 또 자동차 부품의 중국 수출은 2004년 17억4천만 달러에서 2005년 26억9천만 달러로 큰폭으로 증가했으나, 지난해 26억6천만 달러, 지난 1~4월 8억9천만 달러로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으로부터의 완성차 수

입은 2004년 2억7천만 달러, 2005년 3억4천만 달러, 2006년 4억7천만 달러, 지난 1~4월 2억1천만 달러로, 부품수입은 2004년 9억8천만 달러, 2005년 10억1천만 달러, 2006년 11억2천만 달러, 1~4월 3억9천만 달러로 각각 상승중이다.

협회는 이와 함께 세계 자동차시장에서의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을 다시 한번 예고했다. 중국이 고성장 및 개방화를 통해 선진기술을 습득함으로써 현재 5.3년 가량의 한·중 자동차산업의 격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에서의 시장점유를 추이에 있어서도 한국은 하락세인 반면 중국은 상승세라는 점도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는 한 요소라는 견해를 밝혔다. 나이가 중국은 배기량 1천800cc 이하 중소형 승용차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목표로 하는 등 2010년부터 수출을 본격화함으로써 한국과의 정면 승부가 불가피해 보인다. /연합뉴스



IT기업 CEO 간담회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과 주요 IT기업 CEO들이 간담회를 열고 최근 IT업계 현황과 IT 산업전망 논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가세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 40% 부과

국세청, 비영업용 승용차 매입세액 공제 안돼

국세청은 19일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7.1~7.25)을 맞아 사업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할 때 착오로라도 잘못 신고하는 경우 40%의 가산세를 물 수 있고, 세부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비영업용 승용차 매입세액 공제 '안돼' =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영업용 승용차란 자동차매입이나 택시회사·렌터카 회사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한도액은 500만원 = 소매·음식·숙박업 등 최종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한 경우 연간 500만원의 한도내에서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응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중고품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어도 취득가액의 106분의 6을 공제받는 점을 이용해 재활용 자원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영수증을 만들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안된다.

▲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 '안돼' = 이미 폐업한 사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안된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보다 적게 신고 '안돼' = 소매·음식업 등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들의 경우 정확한 판매현황을 집계하지 않고 종전의 신고수준을 기준으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안된다. /연합뉴스

국세청은 19일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7.1~7.25)을 맞아 사업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할 때 착오로라도 잘못 신고하는 경우 40%의 가산세를 물 수 있고, 세부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개인 용도 지출은 안돼 = 개인적인 용도로 식료품을 구입하는 경우와 같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 안돼 = 재활용 폐자원이나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자체·면세사업자·일반가계·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폐자원 또는

부도덕 건설업체 학교시설 공사 참여 제한

전국 각지로 사무실을 옮겨다니며 공사를 수수하는 '철새' 건설업체나 이윤이 적다고 사업을 돌연 포기하는 부도덕한 건설업체는 학교시설 공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교육부는 2005년부터 도입된 온 학교시설 임대형민자사업(BTL) 과정에 부도덕한 건설업체의 참여를 원천 봉쇄하는 내용을 담은 개선 방안을 마련,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학교시설 BTL사업은 민간 건설업체가 자금을 투입, 학교를 신·개축하거나 도서관·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완공한 뒤 소유권을 정부나 지자체에 이전하고 운영권을 위임받아 임대 형식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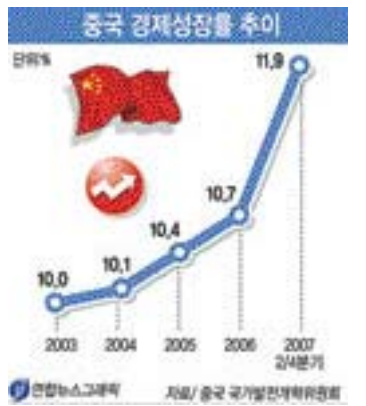
개선 방안은 따르면 학교시설 공사에 단독 응모하면 설계 수준과 입찰가에 관계없이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왔으나 앞으로는 설계 수준 등을 절대 평가해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수주하지 못한다. /연합뉴스

중 2분기 GDP 성장률 11.9%

12년만에 최고

중국의 올해 2·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작년 동기 대비 11.9% 성장했다고 블룸버그가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를 인용해 19일 보도했다. 올해 1·4분기 GDP가 11.1% 증가한 것에 비해 중국 경제의 성장 속도가 빨라졌으며 12년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중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작년 동기 대비 4.4% 상승했으며 같은 달 생산자물가지수(PPI)도 2.5% 상승했다. 한편 중국의 6월 소매판매는 작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 DTI 규제 강화 대부업체들 수혜?

자금수요 몰려 반사이익

금융감독당국이 보험사·저축은행·상호금융사 등 비은행권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부업체들이 다시 한번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와 저축은행은 비은행권에서도 상대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업체 반사이익 얻을 듯 =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6억원 이하 담보물에 대한 DTI 규제에 비은행권에도 적용됨에 따라 대부업체들이 상당한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은행권은 이미 담보인정비율(LTV) 규제와 DTI 규제를 모두 적용받고 있고 8월부터는 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회사 등 비은행권도 LTV와 DTI 규제 대상이 된다.

금융감독당국이 일부 금융소비자들이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은행권에서 비은행권으로 이동,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는 대부업체 혼자 이같은 풍선효과를 누리게

됐다 의미다. 이들은 간판만 대부업체일 뿐 대출금리를 7~8%대로 하면서 LTV를 70~80%까지 적용해준다.

◇보험사·저축은행 타격 예상 = 보험사와 저축은행은 이번 규제안 부과로 주택담보대출시장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보험사는 6억원 이하 DTI 규제 측면에서 은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다른 비은행권 회사들은 서민금융회사이란 이유로 어느 정도 예외를 인정하지만 보험사는 이같은 예외 대상이 되지 못했다.

저축은행 역시 주택담보대출 영업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보험사에 비해 DTI가 5~10%포인트 가량 더 적용되지만 저축은행은 대출금리가 높아 결국 대출한도는 같아지게 된다.

DTI는 부채 상환액을 개인의 소득과 대비 시키는 개념인데 저축은행은 은행·보험사에 비해 금리가 1~2%포인트 가량 높아 소비자 입장에서 부채 상환액이 많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대출한도는 결국 은행권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연합뉴스

일주일이면 치료 완료

OO 선정 우수기관

텔런트 지정병원...

'일주일이면 치료할 수 있다'처럼 치료기간을 명시하거나 의료와 무관하거나 환자유인 소지가 있는 'OO 신문 선정 우수의료기관' 'OO방송국 텔런트 지정병원' 등과 같은 표현이 들어간 의료광고를 하는 의료기관은 단속과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의료기관이 진료·수술방법의 장점을 소개하는 의료광고를 할 때 원칙적으로 부작용도 명시해야 하며,

이런 의료 광고 처벌

'칼 대지 않고 침으로 치료한다' 같이 예이긋한 거짓·과장광고를 한 경우를 집중 단속해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의료광고는 올 4월 초부터 허위·과대광고, 소비자 현혹 광고, 평가되지 않은 신 의료기술 광고 등 일부 광고 금지사항을 뺀 나머지 모든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쪽으로 대폭 확대됐다. 하지만 의료광고 사업자의 업무가 의협·치협·한의협 등 의료인 단체에 위탁운영되면서 협회별로 심의기준이 달라 의료광고 심의의 공정성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지적이 잇따랐다. /연합뉴스

에 이긋한 거짓·과장광고를 한 경우를 집중 단속해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의료광고는 올 4월 초부터 허위·과대광고, 소비자 현혹 광고, 평가되지 않은 신 의료기술 광고 등 일부 광고 금지사항을 뺀 나머지 모든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쪽으로 대폭 확대됐다. 하지만 의료광고 사업자의 업무가 의협·치협·한의협 등 의료인 단체에 위탁운영되면서 협회별로 심의기준이 달라 의료광고 심의의 공정성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지적이 잇따랐다. /연합뉴스